

제281회 강서구의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 8. 30.

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
미 래 · 복 지 위 원 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년 8월 30일
전문위원 허 은 옥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1 - 20
- 나. 발 의 자: 송순효 의원 외 6명
- 다. 발의일자: 2021년 2월 18일
- 라. 회부일자: 2021년 2월 25일

※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19일~2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2월 2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소관부서에 대한 이견이 있어 상정하지 않고, 2021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전담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제281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됨.

2. 제정이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구의 모든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의 수립과 시행 (안 제4조)
- 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규정 (안 제5조)
- 마. 아동학대예방위원회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 바. 학대 피해아동 쉼터, 긴급전화 설치 및 피해아동 지원, 전담의료기관 지정 등 (안 제7조~제10조)
- 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행사와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2조)
- 아.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자. 비밀유지 등의 의무에 관한 규정 (안 제14조)
- 차.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 (안 제15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 라. 기 타: 입법예고(2021. 2. 19. ~ 2. 24.)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제정취지

-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구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2조는 용어 정의로
 - 이 조례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와 같이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하고,
 - “보호자”는 법 제3조제3호와 같이 하며,
 - “아동학대”는 법 제3조제7호와 같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그 밖에 상위법에 따라 “피해아동”,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 정의하였음.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고,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조사·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지도·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는 예방계획의 수립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기본정책, 교육 및 홍보, 재원의 조달 방법, 협력체계 구축, 아동학대 실태조사 및 사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구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매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강행규정)

- 안 제5조에서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규정으로 교육청, 영·유아보육시설, 사법경찰,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상시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음.
- 안 제6조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하되,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 위원회¹⁾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아동학대 신고를 위한 긴급전화 설치를 위한 규정을, 안 제9조에서는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치료 등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에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행사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2조(기능) 및 제3조(구성) 관계법령 참고

- 안 제13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단체 및 시설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에서 관련업무 종사를 통해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비밀유지 등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15조에서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하였음.
- 또한 부칙 규정에서 제2조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기능)에 제7호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소관 사항”을 신설하였음.

다. 종합의견

-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며(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및 제3조제7호의2),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아동복지법 제22조)
-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8월 발행한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2015년 11,715건에서 2019년 30,045건으로 5년 사이 2.6배나 증가하였고,
 -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아동학대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법」 개정(20.10.8. 시행)²⁾ 및 아동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중 일부를 이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함(법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제46조)

보호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2020년 10월부터 공공 중심 아동 보호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으며,

- 또한 강서구에서도 2020년 7월 아동보호팀 신설 및 직원배치, 9월 아동 보호 전담요원(2명) 배치, 10월 아동학대조사 공공화(강서아동보호 전문기관→강서구 이관), 2021년 1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추가배치(2명), 2021년 7월 아동복지 전담부서 신설 등 아동보호 공공화를 추진 및 강화해 나가고 있음.

-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2021년 7월말 현재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 22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운영 중

- 또한 지난 제280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함에 따라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별도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더욱 커짐.

- 강서구에서는 조직개편 이전 아동학대 예방 업무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아동학대 신고 및 아동보호에 관한 업무는 생활보장과에서 담당하고 있었으나 2021년 7월 아동청소년과가 신설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업무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복지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신설된 아동복지 전담부서의 체계적인 아동보호 정책의 추진과 아동 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를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의 입법취지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됨.

참고

아동 학대 현황

□ 시도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2019)

(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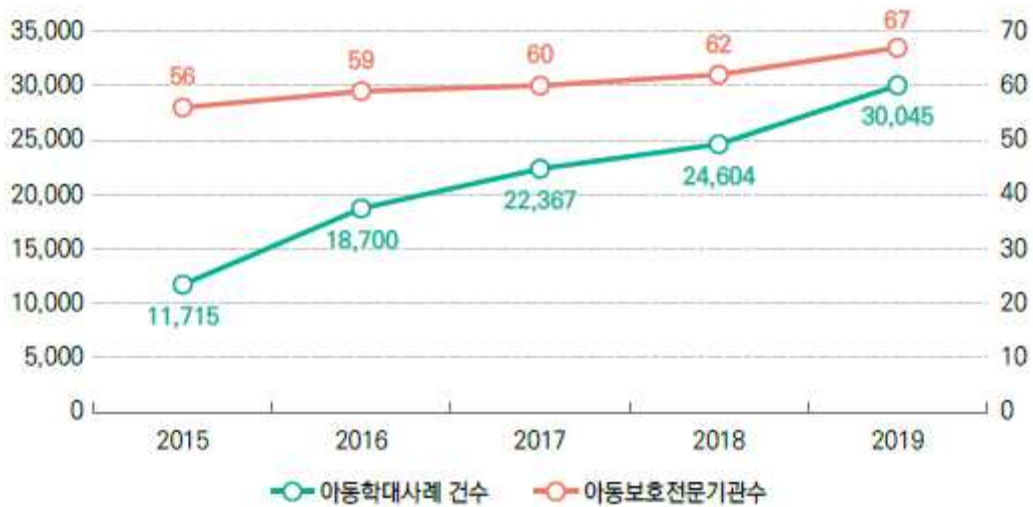
시도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계	
서울	86	(5.9)	3,267	(8.8)	3,353	(8.7)
부산	12	(0.8)	2,290	(6.2)	2,302	(6.0)
대구	64	(4.4)	1,823	(4.9)	1,887	(4.9)
인천	93	(6.4)	2,940	(8.0)	3,033	(7.9)
광주	23	(1.6)	1,066	(2.9)	1,089	(2.8)
대전	74	(5.1)	1,138	(3.1)	1,212	(3.2)
울산	15	(1.0)	898	(2.4)	913	(2.4)
경기	646	(44.2)	9,331	(25.3)	9,977	(26.0)
강원	64	(4.4)	1,772	(4.8)	1,836	(4.8)
충북	66	(4.5)	1,336	(3.6)	1,402	(3.7)
충남	62	(4.2)	1,801	(4.9)	1,863	(4.9)
전북	58	(4.0)	1,935	(5.2)	1,993	(5.2)
전남	64	(4.4)	2,389	(6.5)	2,453	(6.4)
경북	54	(3.7)	2,155	(5.8)	2,209	(5.8)
경남	63	(4.3)	1,456	(3.9)	1,519	(4.0)
제주	11	(0.8)	948	(2.6)	959	(2.5)
세종	5	(0.3)	375	(1.0)	380	(1.0)
총계	1,460	(100.0)	36,920	(100.0)	38,380	(100.0)

출처: 보건복지부 “2019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2020년 8월 발행)

□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5개년)

(단위 : 건, %, 개소)

구분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아동학대사례	건수	11,715	18,700	22,367	24,604
증가율		16.8%	60%	20%	10%	22%
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수	56	59	60	62	67
	증가 기관수	5	4	1	2	5



출처: 보건복지부 “2019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

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 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⑥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제3항 각 호의 업무
2. 보장원의 장: 제6항 각 호의 업무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제46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소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